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I 개요

1. 추진배경	06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08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13
4. 적용대상	14
5. 성격 및 구성	14

II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1. 특성	16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17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개인정보처리자)

1. 기획·설계 단계	21
2. 수집 단계	29
3. 이용·제공 단계	37
4. 보관·파기 단계	42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44

IV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52

■ 활용 안내사항	54
■ 부록1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	55
부록2 아동·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69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요

1. 추진 배경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4. 적용 대상
5. 성격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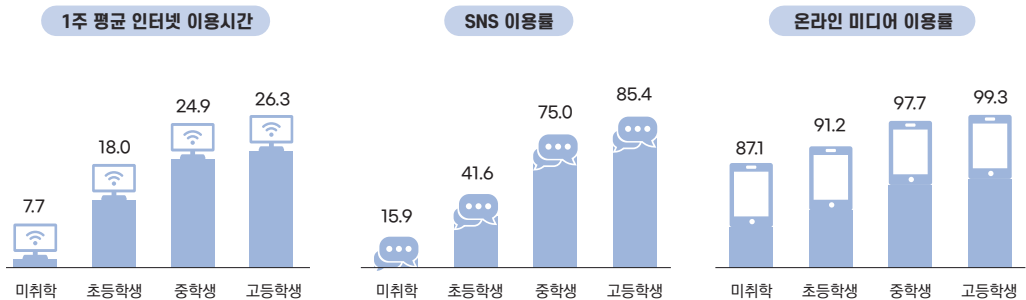


I 개요

1 추진 배경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 2021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급격하고 상이한 발달 과정에 따른 차등적 접근 요구

-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행사 미숙
- 아동은 유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과정을 거치며 그 특성이 연령대별로 상이하여 차등적 보호조치 필요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가. 해외 : 영국, 미국 등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 규정

영국, 미국 등 세계 각 나라는 아동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판단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규범을 강화하는 추세

- **영국** : 영국은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ivacy Act ; DPA) 제123조에 근거하여 ‘연령 적합 설계 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이하 ‘AADC’)' 제정
- 아동(0~17세)의 연령을 총 5개 단계로 나누어 연령별 보호 조치 규정

영국의 AADC 주요내용

아동 범위	18세 미만 연령 범위 구분 (5개 단계)
대상 사업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SS) ¹
일반원칙	①아동 최선 이익의 최우선 고려, ②연령별 적용, ③개인정보의 유해한 사용 금지, ④투명성, ⑤정책 및 커뮤니티 표준 유지, ⑥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 ⑦데이터 수집 및 ⑧공유 최소화, ⑨위치정보 비활성화 기본 설정, ⑩아동보호기능 제공 시 아동에게 고지, ⑪프로파일링 비활성화 기본 설정, ⑫부적절한 네티지 기술 사용 금지, ⑬인터넷에 연결되는 완구 제공 시 규약 준수방안 마련, ⑭아동 스스로 정보보호권 행사 및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온라인 도구 제공
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DPA Art.9)
특징	아동 기본 권리 보호 책임 및 아동 최선의 이익 강조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정보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²
제재	2천만 유로(1,75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 부과

1 “정보사회서비스”란 서비스 수령자의 개별적 요청에 대해 통상 보상을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함

2 마케팅 목적으로 아동 또는 기타 취약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아동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경우 서비스 설계 초기 단계에서 DPIA를 수행하도록 함

-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이하 ‘COPPA’)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적용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 제정

미국의 COPPA 주요내용

아동 범위	13세 미만
대상 사업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지하는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자 및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
일반원칙	아동이 이해하기 쉬워야 함(짧고 다채로운 표현, 속어 및 대중문화 문구 등 이용)
동의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전 웹사이트 운영자의 아동 부모에 대한 고지 및 동의
특징	법정대리인에 대한 아동 개인정보의 접근 및 삭제권 보장
기업의 자율적 노력	세이프하버 프로그램(Safe harbor programs) ³
제재	주 법무장관에 의한 민사소송 및 FTC 법에 따른 벌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주요 처분 사례

- '19. 9월 Youtube에 대해 아동 대상 채널 시청자로부터 부모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 없이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를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영구적 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s)를 수집하여 COPPA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 '19. 2월 틱톡에 대해 ①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 음성, 위치정보 등 수집, ②개인정보 장기간 보유, ③부모의 데이터 삭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57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3 COPPA §312.11. 사업자가 COPPA와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FTC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312.2~§312.8)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 시 해당 운영자에게는 공식 집행조치 대신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의 자체 검토 및 징계 절차를 적용함

- **EU** : GDPR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 및 잊힐 권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통지 의무 규정

EU GDPR 아동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

아동 범위	16세 미만 (개별 회원국별로 기준 연령을 13~16세 범위에서 조정 가능)
대상 사업자	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일반원칙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작성
동의	보호자 고지 및 동의 필요
특징	아동을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아동에 대한 정정권, 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인정
기업의 자율적 노력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⁴
제재	1천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2%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 **중국**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취급하고, 처리 시 보호자 동의 및 별도 처리규칙 마련 의무 부과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

아동 범위	14세 미만
대상 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원칙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고지
동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 필요
특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 개인정보에 포함
제재	5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

4 §40.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각 범주를 대표하는 협회 등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아동의 보호, 친권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음

나. 국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명확하고 쉬운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법정대리인의 열람 등 요구권, 명확하고 쉬운 개인정보 고지 의무, 정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의무 등 규정
-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 규정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

아동 범위	14세 미만
대상 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특례 규정 있음)
일반원칙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의무 개인정보위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도 있음)
특징	법정대리인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권 규정
제재	<p>〈개인정보처리자〉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p> <p>〈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p>

[참고] 국내·외 법적 현황 비교

구분	영국	미국	EU	중국	한국
아동 범위	18세 미만 연령 범위 구분	13세 미만	16세 미만 (국가별 13~16세)	14세 미만	14세 미만
대상 사업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사회서비스	상업적 목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	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
일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연령별 적용, 높은 수준 기본값, 데이터 수집·공유 최소화, 프로파일링 비활성화 등 15개 원칙 제시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명확하고 쉬운 언어 이용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성, 권익에 미치는 영향 고지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한 고지, 아동 보호 시책 마련 의무
동의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 동의 필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전 부모 동의, 동의 전 사전 고지 의무화	보호자 고지 및 동의 필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 동의
제재	2천만유로 또는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중 높은 금액	민사소송 및 FTC 법에 따른 벌금	1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총 매출의 2% 중 높은 금액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벌금	(일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1) 아동·청소년의 범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EU·영국 등 해외에서도 특별한 보호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 * 1989년 11월 UN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비준
- ➔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령상 보호 대상인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고려하고자 함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①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②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무·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안내하고자 함
 - ① 유형1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② 유형2 :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대다수의 청소년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는 서비스(SNS, 포털, 게임, 메신저 등)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3) 안내 내용 및 방법

- **내용** :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안내
 - 최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안내하고자 함

● **방법** :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관련 해외 동향 소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미국·영국 등 해외 동향을 함께 소개하고자 함

4 적용 대상

① **개인정보처리자(제Ⅲ장)** : 업무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

※ 개인정보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5조, 제27조~제31조, 제33조~제38조, 제59조 준용)

② **제조사 및 개발자 등(제Ⅳ장)**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기·완구 등을 제조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앱·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 등을 의미

※ [부록] : 보호자·교사 및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고할 사항 및 보호수칙 안내

5 성격 및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자율점검용 안내서**임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안내함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영국 등 해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준수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



II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1. 특성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II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1 특성

- **(의사표시의 불완전성)**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함**
- **(정보의 지속성)**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적되어 정보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광범위한 활동 범위)**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여가·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대규모 개인정보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관련 주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후견적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정보주체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보호자, 사업자, 국가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
 -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향후 정보주체로서의 역량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자, 사업자, 국가 등 각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
 -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처리되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②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와 그 이후의 장기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특성	개인정보 보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표시의 불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한 정보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활동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법정대리인은 아동이 향후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과 충분히 소통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Rights of the Child)」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인권의 기본 원칙으로,
 - 만 18세 미만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 스스로 구제 절차를 이용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기업, 국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함으로써,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 아동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온라인 이용행태가 다름
 - 따라서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의 **역량과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설계할 필요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개인정보처리자)

1. 기획·설계 단계
2. 수집 단계
3. 이용·제공 단계
4. 보관·파기 단계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1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



-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 확인(22쪽)
-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24쪽)
- 현금,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 자제(25쪽)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동의 확인(29쪽)
- 수집한 법정대리인 정보는 동의 확인 후 파기(43쪽)
(법정대리인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까지 보유 가능)

3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관



-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이용·제공, 안전하게 보관(42쪽)
-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35쪽)

※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용자가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행태정보 수집·활용 자제

4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고지



-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림, 영상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 고지(34쪽)
- 개인정보 권리 및 행사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

5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권리 행사 적극적 지원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 개인정보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 지원(44쪽)

1 기획·설계 단계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⁵에 따라 기획·설계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여 **예상되는 침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계별 보호 수칙(「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	
기획	① 꼭 수집이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제2조, 제3조)
	②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 사항 확인(제15조, 제22조~제24조의2)
설계	③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제3조, 제16조)
	④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안전조치 적용(제29조)
	⑤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방법을 투명하게 적용(제30조)
	⑥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권리 행사 보장(제35조~제38조)
	⑦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제17조, 제18조, 제26조)
	⑧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수집 방지(제21조)
	⑨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제21조, 제27조)
점검	⑩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소 점검(제33조)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할 것을 권고함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 고려사항

①적절한 방법으로 연령 확인, ②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③현금이나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 설계 자제, ④위치추적 옵션 비활성화, ⑤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5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 : 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1-1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합니다.

유형1 권장 유형2 권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의 연령 정보를 수집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CHECK

연령 정보 수집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령 정보를 수집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시·청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앱·웹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델·캐릭터 등이 아동 지향적인 경우
- ✔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는 서비스*(SNS, 메신저, 게임, 포털, 학습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목적(2021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 게임·오락(68.4%), 소셜 미디어(58.1%), 교육·학습(49.4%), 동영상(47.9%) 등

참고 미국 COPPA 적용 대상인 “운영자(operator)”의 범위

-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directed to children) 상업적 웹사이트/온라인 서비스 운영자⁶
- 일반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이나,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acknowledge)이 있는 경우
-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연계된 플러그인 또는 광고 네트워크 사업자 중 해당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방법1)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 (방법2) “만 14세 이상” 이라는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

참고 사례 **이용자 연령 확인 방법**

예시 1

생일이 언제인가요?

생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005년 10월 23일

다음

2004	9월	22
2005	10월	23
2006	11월	24

예시 2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만 14세 이상입니다.

예시 3

14세 미만입니다.
14세 미만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입니다.

만 14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직접입력 v

가입동의받기 법정대리인 본인 인증

➔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이라는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만 14세 미만 여부를 파악해야 함

6 COPPA RULE §312.2 Definitions 중 일부

Web site or online service directed to children means a commercial Web site or online service, or portion thereof, that is targeted to children.

(1) In determining whether a Web site or online service, or a portion thereof, is directed to children, the Commission will consider its subject matter, visual content, use of animated characters or child-oriented activities and incentives, music or other audio content, age of models, presence of child celebrities or celebrities who appeal to children, languag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Web site or online service, as well as whether advertising promoting or appearing on the Web site or online service is directed to children.

The Commission will also consider competent and reliable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audience composition, and evidence regarding the intended audience.

(2) A Web site or online service shall be deemed directed to children when it has actual knowledge that it i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from users of another Web site or online service directed to children.

1-2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유형1 **권장** 유형2 **권장**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설정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가입한 SNS 계정에 대해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친구·팔로워 등만 계정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영상·사진 등을 업로드 할 때에도 ‘전체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앱·웹 사이트에 걸친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가입 시 설정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연령대에 맞는 설명을 제공하여 스스로 설정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영구적으로 변경한다는 옵션**과 해당 세션·사안에서만 일시적으로 변경한다는 옵션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사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설정 : 공개 범위 설정



➡ 일정 연령 미만의 이용자가 가입하는 경우 계정을 비공개로 기본 설정(친구, 팔로워 등만 공개)하고, 영상을 포스팅할 때마다 공개 범위를 선택하도록 함

1-3

아동·청소년에게 현금이나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유형1 권장 유형2 권장

- 아동·청소년이 서비스 이용 도중 현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잘못된 사례 현금, 상품 지급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

이모티콘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업무위탁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신청완료 취소

참여 방법

STEP 1 푸시동의 + 최초로그인 >>> 전원 지급!

STEP 2 캐시적립 >>> 참여한 캐시의 10% 추가 지급!

사전 예약 신청

휴대폰 번호 입력 (숫자만 입력) 신청하기

[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SMS 수신 동의 [상세보기](#)



1-4

위치추적 옵션은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위치추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형1 권장 유형2 권장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치 추적 옵션은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최소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접근권한이 필요한 사유 및 위치추적 사실 등을 아동·청소년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위치 액세스 허용 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거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치 액세스 허용 권한을 '허용', '거부'로만 제시하는 것은 지양

참고 사례 위치 액세스 허용 권한

예시 1

<input type="radio"/>	항상 허용
<input checked="" type="radio"/>	앱 사용 중에만 허용
<input type="radio"/>	거부

예시 2

한 번 허용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
허용 안 함

참고 영국 AADC 상 아동 위치정보의 중요성

- 아동의 위치정보는 아동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 또는 추적하는 데 이용될 경우 납치, 정신적 학대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아동의 위치정보가 지속적으로 공유될 경우 사적 영역에 기반한 자기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받아 프라이버시, 모임의 자유,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1-5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1

해당없음

유형2

권장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앱 또는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참고 사례 만 14세 미만 아동 부정 사용 방지 사례

① 부정 회원가입 추정 시 추가 인증 절차 마련

■■■■■■■■■■을 사용할 수 없는 연령입니다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하셨으므로 회원님의 계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에 공유한 콘텐츠의 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 이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

로그아웃

나이를 인증해주세요

You must be at least 13 years old to have an ■■■■■■■■■■ account. We disabled your account because you are not old enough yet. If you believe we made a mistake, please verify your age by submitting a valid photo ID that clearly shows your face and date of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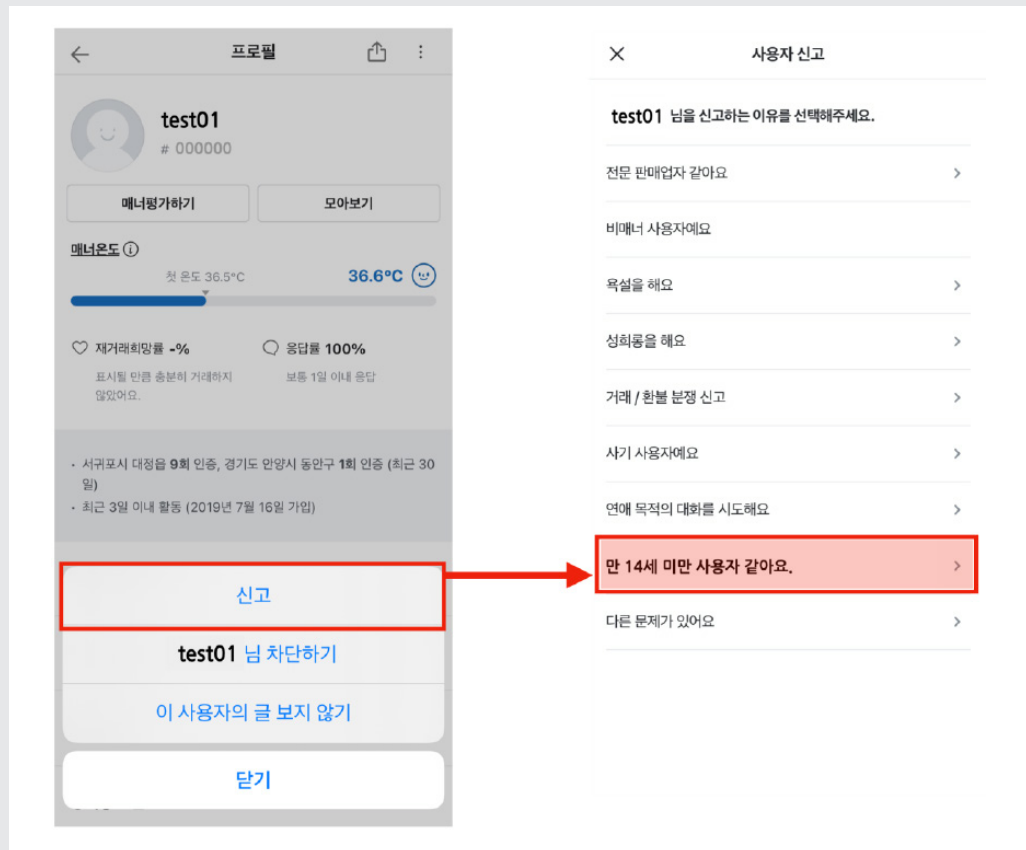
이름

이메일 주소

Please provide the email address connected to your account.

- ➡ 이용자가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회원가입을 제한한 이후 동일 IP에서 생년월일을 수정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나이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② 사용자 간 모니터링을 통한 만 14세 미만 사용자 신고



➡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고거래 앱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마련

2 수집 단계

2-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해당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구체적으로 ①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②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③동의내용을 게재한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④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48조의3제1항 제4호~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함

CHECK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911조)
 - 친권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친권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909조, 제90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은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선임후견인(민법 제932조) 순서에 따릅니다.

- 특히, 이용자의 연령 직접 기입 또는 ‘만 14세 이상’ 미체크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부과

참고 사례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통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위해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시행령 제17조제4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 제13조제1항)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시행령 제48조의3)

1 동의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①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예) 동의 항목에 체크, 동의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력 등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표시를 확인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법정대리인에게 알림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①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예) 동의 항목에 체크, 동의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력 등



② 동의내용을 게재한 웹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를 입력하도록 함



③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카드정보가 유효한지 확인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예) 동의 항목에 체크, 동의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력 등



②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①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제공

OR



① 법정대리인에게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을 전달



② 법정대리인이 동의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함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①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



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음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①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

OR



① 법정대리인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 등)을 안내



②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예시1)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OR



(예시2)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등

CHECK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2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의무자(법정대리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가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8세 이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봄(「위치정보법」 제26조)

「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2-2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림, 동영상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권장

-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거나 각종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5항)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사례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대부분의 네이버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캘린더,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네이버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자를 확인하고,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직 14살이 되지 않은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님 등 보호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정보도 함께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선택] 이메일 주소, 프로필 정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카카오의 개인정보 다루는 방법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삭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



-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외에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친숙한 방식으로 작성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음

2-3

아동·청소년의 행태정보를 수집한 맞춤형 광고는 최소화해야 하며,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앱/웹 사이트 방문 이력, 검색 및 구매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용 목적, 결합되는 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의 제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형1 권장 유형2 해당없음

-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비로그인 상태에서 이용 등)로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여서는 안되며,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비로그인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성인 대상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만 14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능

만 14세 미만의 행태정보 보호(「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2.))

- 광고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넛지 기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형1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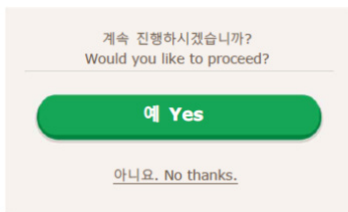
유형2

권장

- “넛지 기술”(nudge techniques)은 공급자가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의도한 대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술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넛지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설계를 하지 않아야 함**
 - 또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관련 주요 설정 변경 시 신중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넛지 기술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영국 AADC의 넛지 기술 관련 규정 내용

- **(중요성)** 넛지 기술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인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 사용자는 어떤 옵션이 제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예' 옵션을 누르는 쪽으로 유도(nudge)될 수 있음

- **(준수사항)** 넛지 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낮추도록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과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예시 : 일정 시간 인터넷 이용 후 휴식 유도 등)해야 함

3 이용·제공 단계

3-1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나 법령에 의해 이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①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또는 제공이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3-2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할 수 있음(다만, ④~⑧은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해 추가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 ‘소셜로그인’이란 특정 웹 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들이 별도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소셜로그인 제공업체(플랫폼)는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앱, 웹)에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
- 플랫폼 서비스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로그인을 통해 다른 웹 사이트 또는 앱에 가입하려는 경우**,
 - **플랫폼 사업자**는 소셜로그인을 이용하려는 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수집한 연령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 동의 화면에서 만 14세 미만 여부를 체크하는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구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소셜로그인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 여부 확인(예시)

제공업체(A) 동의 항목		
✓ [필수]	A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보기
✓ [필수]	만 14세 이상입니다.	
사용업체(B) 서비스 동의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보기

◀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A)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B)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3-3

아동·청소년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형1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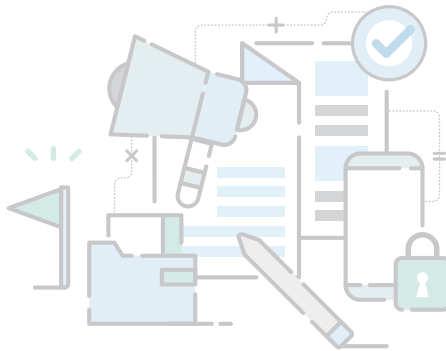
유형2

권장

- 아동·청소년에게 AI 스피커, 챗봇, 말하는 인형 등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않아야 함
-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유형1

권장

유형2

권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제공하거나, 연령 등을 기반으로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을 하려는 경우,

- 해당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선호, 경제적 상황, 건강, 관심 분야, 행태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의 정보를 평가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이용·검색 이력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또는 다른 이용자가 게시한 유해 콘텐츠(음란물, 폭력물,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 등) 추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연장시키기 위한 전략 등

참고 영국 AADC 상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 내용

- **(중요성)** 아동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특히 프로파일링에 있어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준수사항)** 프로파일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의 보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고, 아동이 프로파일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프라이버시 설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함

4 보관·파기 단계

4-1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수행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관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 접근 권한의 관리
기술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위·변조 방지 •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잠금장치 마련 • 보조 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4-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회원 탈퇴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복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파기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표준지침 제10조 제4항)

CHECK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 정보의 파기 시점

-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해 수집한 법정 대리인의 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처리목적이 달성(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된 경우 파기해야 함
 - 다만, 고객 서비스 대응 등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동의서, 이메일, 녹취 등)는 아동의 회원 탈퇴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때까지 보유 가능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였거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에 대해 거부의를 표시하였거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표준지침 제13조)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5-1

아동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등이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를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함)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37조, 제39조의7)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공개하여야 함
 -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10일 이내) 응해야 함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 확인 내역(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등) 통합 조회 및 웹 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권리 행사(열람, 처리정지 등)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주요 내용]

- 🔍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 조회
- 🔒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예방 및 대응
- 🔍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개인정보 확인과 수정 지원


**본인확인(인증) 내역
한눈에 확인**

주민번호, 휴대폰, 아이핀, 신용카드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 파기**

장시간 미사용 웹사이트, 회원탈퇴 거부 웹사이트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내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직접 행사**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5-2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의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유형1

권장

유형2

권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본인이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게시물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체없이 접근배제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청소년 본인이 추가적으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한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지체없이 캐시 등을 삭제하여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게시판 관리자 등이 해당 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거나, 해당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배제요청 거부 가능

CHECK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 예시(「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2020. 12, 개정))

-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사례 포털 검색결과에서 미성년자 이미지 삭제 기능 제공

Google 검색결과에서 미성년자 이미지 삭제하기

Google은 만 18세 미만인 개인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선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합니다. 단, 공익이나 보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즉 이러한 이미지는 이미지에 표시되지 않으며 Google 검색의 모든 기능에 판매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Google 검색 결과에서 이러한 콘텐츠의 삭제 요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중요: 이미지가 검색결과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미지를 로스팅하는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웹마스터에게 연락하여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마스터에게 문의하는 방법 알아보기](#)

Google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하기

원하는 작업	Google 검색에서 발견한 정보 삭제	✎
삭제하고 싶은 정보를 어디서 보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고 싶은 정보	Google 검색결과 및 웹사이트에 표시	✎
사이트 웹마스터에게 문의해 보셨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input type="radio"/> 아니요,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radio"/> 예	

➡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는 기능 제공

참고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관련 해외 입법례

- (EU GDPR) 정보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권리와 잊힐 권리를 가져야 함. 특히, 정보주체가 아동일 때 동의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리스크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성인이 된 후에도 삭제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⁷
- (미국 CBPC)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응용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의 등록 이용자 캘리포니아 거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콘텐츠 또는 정보의 제거를 요청하여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⁸

7 GDPR 전문 (65) A data subject should have the right to hav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rectified and a 'right to be forgotten' where the retention of such data infringes this Regulation or Union or Member State law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중략) That right is relevant in particular where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or her consent as a child and is not fully aware of the risks involved by the processing, and later wants to remove such personal data, especially on the internet.

8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CA Bus. & Prof. Code §22581(a)(1)(2020)
 (a) An operator of an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directed to minors or an operator of an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that has actual knowledge that a minor is using its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shall do all of the following:
 (1) Permit a minor who is a registered user of the operator's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to remove or, if the operator prefers, to request and obtain removal of, content or information posted on the operator's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by the 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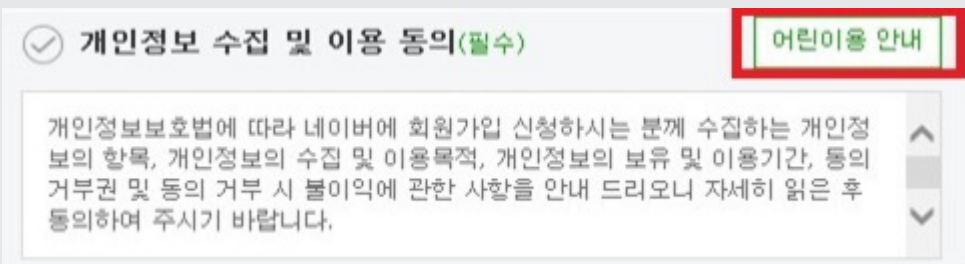
5-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방법을 제공합니다.

유형1 의무 유형2 의무

- 아동·청소년, 아동의 법정대리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행사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아동·청소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참고 사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어린이용 안내 직접 링크 제공



➔ 회원가입 단계에서 어린이용 안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사례

-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시 권익 구제 방법(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아동·청소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필수), 기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분쟁조정 등의 방법 안내(권장)

참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권익침해 구제방법' 작성 예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단계	단계별 보호조치	유형1	유형2
기획·설계	1-1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 확인	권장	권장
	1-2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권장	권장
	1-3 현금·상품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설계 자제	권장	권장
	1-4 위치추적 옵션 비활성화 기본값 설정	권장	권장
	1-5 연령 허위 기재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 마련	해당없음	권장
수집	2-1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해당없음
	2-2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관련 사항 고지	의무	권장
	2-3-1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 시 사전 동의	의무	의무
	2-3-2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로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맞춤형 광고 자제	권장	해당없음
	2-4 부적절한 네티기술 사용 자제	권장	권장
이용·제공	3-1 수집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 확인	의무	의무
	3-2 목적 외 이용·제공 시 별도 근거 확인	의무	의무
	3-3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 제공 금지	의무	권장
	3-4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 마련	권장	권장
보관·파기	4-1 안전한 개인정보 보관·관리	의무	의무
	4-2 개인정보 적법한 파기	의무	의무
권리보장	5-1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 안내	의무	의무
	5-2 개인정보 자기계시물 접근 배제 등 적극 지원	권장	권장
	5-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안내	의무	의무



IV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IV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1 아동 대상 장난감·완구 등 제조사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장난감·완구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역할도 중요함
- 마이크나 카메라 등의 기능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해당 개인정보 전송이 가능한 완구(말하는 인형, 피트니스 밴드, 사진촬영·녹음이 가능한 장난감 컴퓨터 등)를 제조하는 경우,
 -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음성, 불빛 등)으로 이용자가 수집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저장 시 암호화, 안전한 파기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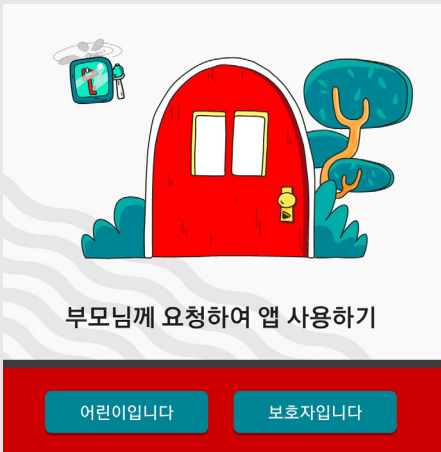
참고 영국 AADC 상 연결식 장난감 관련 규정 내용

- **(중요성)** 인터넷에 연결되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장난감 및 장치(connected toys and devices)는 수집·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어린 아이들이 성인의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큼
- **(준수사항)** 이 경우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와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②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것을 예측하여 이용자 프로필 옵션을 제공하여야 하며, ③제품 구매 및 장치 설정 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④‘적시’ 정보(‘just in time’ information)를 전달할 방법을 찾으으며 ⑤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이를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함

2 아동·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앱·서비스 개발자

-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책임과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나,
 - 아동·청소년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앱·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할도 중요함
- 개발자는 서비스의 기획·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아동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비로그인 상태에서 이용하는 아동 지향 서비스 등)에는 동영상, 그림, 오디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아동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아동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어린이가 알기 쉽게 '어린이', '보호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선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